

제233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전하고 아름다운
여수만들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
공포한다.

2023년 12 월 29 일

여 수 시 장

2023.12.29



여수시 조례 제2017호

붙임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만들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
례 일부개정조례 1부

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만들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만들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**구성한다**”를 “**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**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제5조제3항 중 “**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장, 여수출입국관리소장**”을 “**여수고용노동지청장, 여수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장**”으로, “**경무과장**”을 “**업무담당과장**”으로 한다.

제9조제5항 중 “**분기별**”을 “**연**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**매분기**”를 “**연**”으로 한다.

제22조 중 “**「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**”를 “**「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**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협의회의 구성 및 위촉)	제5조(협의회의 구성 및 위촉)
<p>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<u>구성한다.</u> <단서 신설>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, 경찰서장, 여수시의회의장,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, 여수해양경찰서장, 여수소방서장, 여수세관장, <u>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장</u>, <u>여수출입국관리소장</u>으로 하며, 주간사는 여수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, 부간사는 여수경찰서(이하 “경찰서” 라 한다) <u>경무과장</u>으로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① ----- ----- <u>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</u> 다만,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여수고용노동지청장</u>, <u>여수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업무담당과장</u>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제9조(실무협의회) ① ~ ④
(생 략)

⑤ 실무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주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실무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제12조(회의) ① (생 략)

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분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③ (생 략)

제22조(실비변상)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실무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실무협의회) ① ~ ④
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연 -----

-.

제12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연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실비변상) -----

「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-----
-----.